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범죄자의 고지정보 송부 신청 시 제공의무 부과 >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142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의 고지정보 송부 신청 시 제공의무 부과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의 고지정보 송부 신청 시 제공의무 부과

개정안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u>
⑥ <u>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⑦ ----- ----- <u>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u> ----- ----- ----- ----- -----.

현행	개정안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 ----- -----.
⑧ 삭제	⑧ 삭제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⑩ -----고지절차, 제6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성명,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¹⁾, 아동·청소년의 부모나 학교 등 아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⑦ (생략)

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여성가족부가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전출 정보를 고지하도록²⁾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 가. 아동양육시설
-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 라. 공동생활가정
- 마. 지역아동센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는 자는 현행법 제50조제5항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의 장, 학원 및 교습소,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주로 아동·청소년을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고지받는 자>

1.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5.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 가. 아동양육시설
 -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 라. 공동생활가정
 -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 ⑧ (생략)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장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아동일
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지대
상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범죄자의 고지정보 송부를 신
청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성
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
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현행
고지제도의 도입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아동·청소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고지정보 송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³⁾으로, 성인에 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공개제도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자들에 한정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지정보를 일반 성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⁴⁾.

둘째, 현행법 제49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범죄자의 고지정보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국민 누구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⁵⁾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공개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 좌·우,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임.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의 차이는 성범죄자의 주소·실거주지 상 상세주소⁶⁾ 정도로 크지 않으므로, 공개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참고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을 여성 1인가구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356호,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5) 홈페이지 주소: <https://sexoffender.go.kr/indexN.nsc>

6) 공개정보는 주소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이나, 고지정보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공개정보의 주소 및 실거주지는 00시 00구 00동 00번지까지 나타나고, 고지정보의 주소 및 실거주지 상 상세주소는 00동 00호까지 나타남.

셋째, 개정안과 같이 고지정보 송부 의무를 부과할 경우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4년 성범죄자 고지제도 관련 예산은 39억 3,400만원으로, 2024년 6월 기준 성범죄자 2,953명을 대상으로 약 307만 건이 고지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고지정보 송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관련 재정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주요내용(실적)
2021년	5,635	성범죄자 3,234명 대상 고지 고지건수: 7,458천건 (우편: 5,633천건, 모바일 1,825천건)
2022년	5,324	성범죄자 3,058명 대상 고지 고지건수: 6,234천건 (우편: 4,290천건, 모바일 1,944천건)
2023년	4,377	성범죄자 3,013명 대상 고지 고지건수: 6,909천건 (우편: 4,439천건, 모바일 2,470천건)
2024년	3,934	성범죄자 2,953명 대상 고지 고지건수: 3,069천건 (우편: 2,004천건, 모바일 1,065천건)

주: 2024년 실적은 2024. 6.30.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현재는 고지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주 등으로 특정되어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주소변동을 파악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경우 이사 등의 변동사항을 일일이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이 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에 한정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지 집행을 일반 성인 신청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